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(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)을 따르며,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. 다만,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승계자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1호	1,000	1,200	1,500
나.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54조 제3항제1호	500	700	1,000
다. 법 제10조의5제2항·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1호	1,500	1,700	2,000
1)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			3,000	
2)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				
라.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2호	1,500	2,200	3,000
마. 법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2호의2	1,500	2,200	3,000
바. 법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54조제3항제1호의2	500	700	1,000
사. 법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2호의3	1,500	1,700	2,000
아. 법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제2호의4	1,500	2,200	3,000
자.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	법 제54조 제1항제3호	1,500	1,700	2,000

를 하지 않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				
차.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4호	1,500	1,700	2,000
카. 시공자가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3항제2호	500	700	1,000
타.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5호	1,500	2,200	3,000
파. 시공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2호	1,000	1,200	1,500
하.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3호	1,000	1,200	1,500
거. 시공자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4호	1,000	1,200	1,500
너. 시공자가 법 제14조제2항(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,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5호	1,000	1,200	1,500
더.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4조제3항(법 제39조의5에	법 제54조 제2항제6호	1,000	1,200	1,500

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				
러.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5조제3항(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7호	1,000	1,200	1,500
머.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8호	1,000	1,200	1,500
버.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 2	1,500	2,200	3,000
서.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 3	1,500	2,200	3,000
어.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·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 4	1,500	1,700	2,000
저.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 5	1,500	1,700	2,000
처. 법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 6	1,500	2,200	3,000
커.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6호	1,500	1,700	2,000
터.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7호	1,500	1,700	2,000

퍼. 나프타부생가스·바이오가스제조 사업자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 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7호의 2	1,500	1,700	2,000
허.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8조제4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8호	1,500	1,700	2,000
고.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9조 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 하도록 권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5항제1호	150	200	300
노.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9조 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4항	250	350	500
도.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시·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9호	1,500	2,200	3,000
로.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54조 제3항제2호의 2	500	600	750
모.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 정을 비치하지 않거나 가스사용자 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3항제2호의 3	500	700	1,000
보.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1조 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 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	법 제54조 제1항제10호	1,500	2,200	3,000
소.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 우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 한 경우	법 제54조 제3항제3호	500	700	1,000
오.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3항제4호	500	700	1,000
조.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	법 제54조	1,500	2,200	3,000

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26조제1항(법 제39조의5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 은 경우	제1항제11호			
초.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 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26조제3항(법 제39조의5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12호	1,500	2,200	3,000
코. 법 제26조제4항(법 제39조의5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 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 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13호			
1)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또는 도시가 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 자		1,500	1,700	2,000
2) 도시가스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 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종사 자			300	
토. 법 제26조제5항(법 제39조의5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확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13호 의2	1,500	2,200	3,000
포.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 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 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54조 제3항제4호의 2	500	600	750
호. 일반도시가스사업자,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가 법 제28조의2에 따 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6항		200	

구.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13호의 3	1,500	2,200	3,000
누.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가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8호의 2	1,000	1,500	2,000
두. 법 제29조제3항(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14호	1,000	1,500	2,000
루. 법 제30조제1항(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5항제2호		150	
무. 법 제30조제2항(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16호			
1)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			1,000	
2) 시공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(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)			700	
부. 법 제30조의5제2항(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법 제54조 제3항제5호		800	
수.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41조제3항(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9호	1,000	1,200	1,500

우. 법 제43조제1항(법 제39조의5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17호	
1)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		2,000
2)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 는 시공자		500